

서울고등법원 변론준비기일조서

1차

사 건 .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기 일 : 2006. 4. 7. 10:00

판 사 이 현 숙 장 소 : 서관 305호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공개 여부 :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 2006. 5. 12. 10:20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항소인) 김명호 출석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동욱 출석

원 고

항소장 및 2005. 10.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2005. 10. 21.자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 2006. 4. 3.자 항소이유 보충서 및 준비서면 진술하고, 항소취지는 원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

피 고 대리인

2006. 4. 6.자 답변서 진술

쌍 방 대리인

제1심 변론결과 진술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원고 서증, 증인등)

속 행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원고
별지 이의신청서 기재와 같이 본 조서
이제시 관하여 이의
2006. 5. 19.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위 등본입니다
2006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의봉

5/26 9:50 w

조서 이의 신청서

2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휴대폰:010-5590-891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조서 관련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에 따라,

- 첫째: 민사소송법 제 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위반
- 둘째: 재판장의 청구취지 변경 및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기술되지 않았으며,
- 셋째: 변론조서와 실제 변론에 많은 차이

등의 사유로 이의 신청합니다.

중요 이의 사항들

자세한 것은 첨부한 변론(입증자료1)과 변론준비기일조서(입증자료2)를 비교
참조

1. 민사소송법 제 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 274조의 제1항 제4호(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와 제 5호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55039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자,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에는(입증자료2)



원고가 진술한 세가지 증거, 즉,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을 입증하는 세가지 증거

가.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 야기' 라는 징계 청원사유 (갑 제22호 증)

나.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갑 제8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직3개월에 대한 불복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했던 1995년 말 당시, 피고 성대가 제출한,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갑 제23호 증)에 의하면,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정직 3개월) 바 있습니다."

다.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갑 제24호증, 녹취 자료와 디스크)

를 비롯한

라. 석명사항 중, '학생에 대한 평가 잘못을 이유로 피고 학교측이 교수를 징계하거나 재임용을 탈락시킨 예가 없다'라는 피고 성대의 답변

마. 낙제점을 받은 29명의 학기말 시험 답안지와 재시를 본 2명의 백지 답안지와 재시답안지

바. 93-94 성대 요람 학칙 제11장의 제3절 시험과 성적, 2. 학칙시행규칙, 3. 학사에 관한 내규의 제5 성적평가

사. 94년 1학기 수학1과목의 성적산출 근거(갑 제34호증)

아. 93학년 2학기 수학2와, 94학년 2학기 수학2 성적산출 근거(갑 제35호 증)

등의 증거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2. 4월 7일 변론 조서에 대하여

가. 변론조서에서 누락된 박홍우 재판장의 청구취지 변경

박홍우 판사는, 두개의 청구취지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이 논리적으로 같은 것이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재임용 탈락결정 위법 여부의 사실심리에 의해 교수지위확인을 판단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한다고 하였는바, 박판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관련한 변론 내용입니다.(입증자료1)

박판사:" 청구취지에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두가지로 했는데, 수학을 하셔서 논리적일텐데 논리적으로 같은 거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

원고:"절대적으로 동의 합니다. 논리적, 상식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것을 굳이 따로 구별하는 판사들이 있고, 실제로 1심 판결문에서도, 교수지위확인을 이유없다고 판단했고,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에 대해서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박판사:"교수지위확인되면,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되는 것이고,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이 되면 교수지위확인되는 것.

하나가 되면 그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

원고:"교수지위확인으로 하고,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실심리에 의해 교수지위확인 판단을 해 주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판사:"그렇게 하지요."

나. 사실과 다른 내용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 부른 사람은 없었고, 이동욱 변호사가 사건번호를

부르면서 피고석에, 원고는 원고석에 원고석에 서 있으므로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 5월 12일 변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조서 내용들과 누락된 변론들

가. 사실과 다른 내용

1) <변론조서>

“원고가 조서를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변론]

“재판진행 상황과 변론조서가 달라, 재판조서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때 녹음 신청하면 됩니다.”

2) <변론조서>

“원고는 지난 기일 재판진행 사항을 인터넷에 올린 일이 있지요.”

[실제변론]

“지금의 재판 진행과는 관계없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변론조서>

재판장 판사: “어떤 경위로 올렸습니까”

원고: “그 내용에 대하여 말을 하여야 합니까”

[실제변론]

위와같은 질문과 답은 없었습니다.

4) <변론조서>

“녹음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어떻게 재판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실제변론]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5) <변론조서>

“기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변론]

"메모와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6) <변론조서>

재판장: "2006. 5. 1. 자 방어방법각하신청은, 먼저 그에 대한 각하 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지난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고지."

[실제변론]

재판장은 지난기일에 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7) <변론조서>

원고: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을 재판장은 인정합니까?"

[실제변론]

원고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 "1심에서

지난 10년간 트집잡아왔던, 연구실적에 하자가 없음이 밝혀져, 연구실적 시비는 끝났고

교수 재량권인 학점부여에 대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승진 및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증증거들,

1. 징계사유서 설명서의 '입학시험 채점당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 야기',
2. 성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입시출제오류 지적이 해교행위라 생각하며 학교당국도 단호한 대처한바 있다. 즉 정직3개월"이라고 한 자백 증언
3. 징계의결 요구한, 성대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시인, '입시출제오류가 징계의 결정적'이란 녹음을 들으셨는지요?"

재판장: "제출된 자료들을 재판부는 다 봅니다."

나. 빠진 부분들

첨부된 5월 12일 자 실제변론(입증자료1)과 변론조서(입증자료2)를 비교

참조하기 바랍니다.

결론

4월 7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에는, 박홍우 재판장의 청구취지 변경이 누락되었고, 5월 12일 기일 조서에도 많은 것들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으니 변론준비기일조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입증자료

1. 4월 7일자, 5월 12일자 실제변론들
2. 4월 7일자,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

2006년 5월 19일

위 원고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

4월 7일자 변론준비기일 변론

재판장:"신문기사, 대법원 판결문 등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는 없고, 참고자료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원고:"알겠습니다."

재판장:"2005년 7월 21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송달된 기록이 없는 데, 한 부만 냈습니까?"

원고:"두 부 냈습니다. 한 부만 내면 접수 조치가 되질 않습니다. 송달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잘못입니다."

재판장:"피고에게 한 부를 주었으면 합니다."

원고:"사적으로 건네줘도 되나요?"

재판장:"피고, 괜찮나요?"

피고(이동욱 변호사):"네"

원고:"다음주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최재천 대법원 국정감사 갑27호증 -1(2005. 10. 6.),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질의서 갑 제27호증-2(2005. 10. 4.)

학칙 28호증-1, 시행세칙 28호증 -2, 학사내규 28호증 -3, 백지답안 29호증, 강의 출석부(성적기록표) 30호증 31호증 참고자료 30호증-3까지..."

재판장:"답안지는 어디서 난 건가요?"

원고:"제가 10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1심 판결에서 제가 29명에게 F 준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길래, F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겁니다."

재판장:"33페이지인데, 어떤 것은 써있는 것도 있는데."

원고:"그것은 학기말 시험에서 처음에 31명이 백지를 냈었고, 재시험 기회를 주었는데, 31명 중 2명만 응시하여, 재시험 본 학생의 답안지입니다. 나머지 29명은 재시험에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피고, 이 것이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교수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 확인해보세요."

재판장:"항소장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것이 애매하고, 청구취지 변경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가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으로 되어있네요."

원고:"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은 의미상으로 같으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재임용 거부 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쓸수 있고, 민사에서는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확인이 맞는 용어입니다. 그에 따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서도,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적법 하다고 했고, 그 것을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확인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심리를 한 것입니다."

재판장:"청구취지에 교수지위확인 과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두가지로 했는데, 수학을 하셔서 논리적일 텐데 논리적으로 같은 거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

원고:"절대적으로 동의 합니다. 논리적, 상식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 것을 굳이 따로 구별하는 판사들이 있고, 실제로 1심 판결문에서도, 교수지위확인을 이유없다고 판단했고,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에 대해서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재판장:"교수지위확인되면,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되는 것이고,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이 되면 교수지위확인되는 것.

하나가 되면 그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

원고:"교수지위확인으로 하고,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실심리에 의해 교수지위확인 판단을 해 주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장:"그렇게 하지요."

재판장:"원고는 문서제출 명령을 했는데, 징계받은 성대교수들의 명단과 그 징계 관련된 서류들인데, 이 문서제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피고는 성적평가로 인하여 재임용 탈락내지는 징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이동욱):"네"

원고:"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재판 지연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제출명령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징계 받거나, 재임용 탈락한 교수 없습니다."

재판장:"원고는 그 문서를 보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 왜 하는 겁니까?"

원고:"비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성적 평가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재임용 탈락된 교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 평등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저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것을 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원고:"판사님은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셨나요?"

재판장:"재판부에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원고:"그렇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성대측의 재임용 탈락사유 주장은

첫째, 연구실적미비, 둘째, 견책으로 변경된 징계입니다.

연구실적미비에 대한 것은, 1심재판부도 성대측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

고
견책은 제가 학생들 성적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된다
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장:"다른 문서 제출 명령이 있는데, 학생들의 성적 평가서? 원가요?"

원고:"교수들이 학생 성적을 주고 제출하는 성적기록표입니다."

재판장:"피고는 이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원고:"무슨 확인이 필요한가요? 판사님은 판사님이 졸업한 학교에 가서 성적
표를 땔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적기록표가 없다면, 93-95년 학생들의
성적표 제출을 명령해 주십시오. 교수 별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일단 문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야 문서제출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
다."

원고:"그렇다면, 다음에 학생들 성적표 제출을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수학과만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원고:"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수학과에서 재임용 탈락한 것이 아
니라, 성대에서 탈락한 것이고 성대 전체 교수들과 비교해야 되니까요."

재판장:"..."

원고:"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사건이 작년 2005년 10월 18일
날 접수 되었고, 10월 말경에 문서제출명령을 했는데 그 동안 재판부는 뭐
했습니까?"

재판장:"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에 넘어온 것이 3월 3일입니다."

원고:"제 얘기는 전체 재판부에 대한 겁니다. 민사 소송법 199조에 의하면 5
개월 내에 선고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총칙에 의하면 법관은 신속 공정하
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물론 본인으로서 왜 빨리 처리 안 되는 가 하겠지만, 원고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도 많고..."

원고:"우리나라 재판이 문제가 많으니, 사건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저의 이
터무니 없는 사건도 OECD에 가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송제기 자체가 되지
않고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법원
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재판장:"..."

원고:"사건이 많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무료 자원

봉사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본인 사건을 할 수는 없고..."

원고:"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선례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원고:"선례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장:"다른 사건도 있고...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입니다."